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

2018. 8.

■ 공공 SW사업의 관리·감독 시행 안내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 및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을 위해 국가기관등의 장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사전규격서 및 제안요청서)의 법령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 시 해당기관에 법제도 준수를 권고하여 그 반영 여부를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제24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법령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7조의8(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4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및 개선 권고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감독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감독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법령의 준수 여부 관리·감독
 2.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분석
 3. 법 제24조의4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개선권고 업무의 지원 및 그 결과의 접수·처리 업무의 지원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 고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5항 및 제24조의4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8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의 수집·분석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을 위한 "관리감독 전문기관"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각각 지정한다.

■ 관리·감독 항목

No.	관리·감독 항목	법적근거
1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0조제2항 · 제13조의2 · 분리발주 대상 SW(과기정통부 고시) · SW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6조의2
2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4조의2 ·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기정통부 고시) · 대기업의 공공SW사업자 참여제한 예외 사업(과기정통부 고시)
3	사업금액하한 적용기준 (일괄발주/장기계속 유지보수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4조의2제2항
4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제2항
5	하도급 제한 (사전승인, 50%초과 금지, 재하도급 금지, 계획서 제출요청, 적정성판단기준 명시, 하도급 10%초과시 공동수급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0조의3 · 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6	원격지 개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8조의2 ·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2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제41조
7	SW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14조의2 ·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6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안부 고시) 제60조
8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6조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0조의5 ·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8조
10	특정규격 명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5조제4항제5호

No.	관리·감독 항목	법적근거
11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3조의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4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 · 법 제20조제1항
12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7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안부 고시) 제18조
13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0조제4항 · SW 기술성 평가기준(과기정통부 고시)
14	SW사업 제안서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1조 ·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기정통부 고시)
15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8조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7조제3항·제9조제3항
17	요구사항 상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0조제3항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4조제1항·제7조제1항
18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6조
19	SW사업 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4조의2 · 시행령 제12조의2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4조의2
20	SW사업정보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2조

■ 관리·감독 대상사업

□ 대상사업 : 국가기관등의 장이 발주하는 SW사업

[국가기관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4의2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 지정현황은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 확인 가능
제3호, 제5호의 출자, 출연여부현황은 기관내부의 경영부서를 통해 확인

[SW사업의 정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된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SW사업의 유형]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6조(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 분야)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설계, 각 시스템 요소의 개발 및 조달,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전체를 일괄 책임하에 수행하는 사업
2.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를 패키지 형태로 유통·공급하는 사업
3.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 출판, 음악, 영화 등의 영상, 사진 등의 화상, 게임, 교육, 생활문화 등의 콘텐츠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하여 제작, 유통, 서비스하는 사업
4.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유료로 정보자료를 제공키 위해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해 두고 그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 제공하는 사업

■ 관리·감독 대상사업 사례

□ 관리·감독 대상 SW사업 예시

No	Level 1	Level 2	Level 3
1	ICT 컨설팅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ISP)	BPR/ISP
2			ISMP
3		컨설팅용역	컨설팅용역
4		ICT프로젝트관리서비스(PMO)	정보시스템PMO
5			
6	S/W 및 시스템 개발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홈페이지, 포털
7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일반SW(정보시스템)개발
8			ITS/BIS
9			RFID 등 u-IT개발
10		패키지SW개발 및 도입서비스	패키지SW도입 및 개발
11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	전산실 구축(이전)사업
12			CCTV설치 및 구축 (단순 CCTV HW 구매·설치는 제외)
13			네트워크 환경구축
14		컴퓨터네트워크 또는 인터넷보안서비스	정보보호컨설팅
15			정보보호인프라구축
16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7		전산장비유지관리서비스	전산장비 유지관리
18		운영위탁서비스	운영위탁
19	DB구축 및 자료 입력	데이터서비스	데이터처리
20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공간정보DB구축
21	ICT 콘텐츠 개발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디지털콘텐츠개발
22		온라인홍보 및 방송콘텐츠서비스	온라인홍보 및 방송콘텐츠 개발
23	SW/HW구매	SW/HW구매	SW/HW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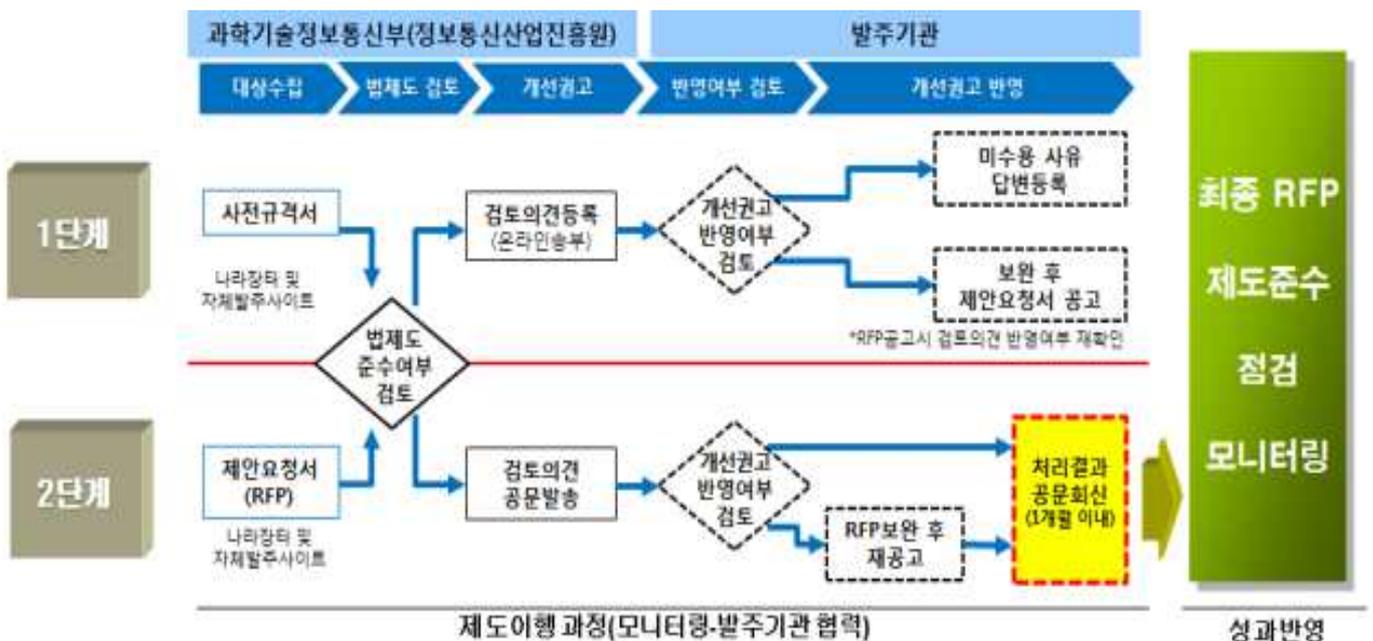
■ 관리·감독 점검시점 및 점검문서

□ 점검시점 : 입찰공고 기간

※ 사전규격 공개사업의 경우 사전규격 공개기간

□ 점검절차

- ①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문서(RFI)와 기관 자체 발주사이트에서 사전규격 문서가 공개되면 검토대상 SW사업을 수집하여 법제도 준수여부를 점검
- ②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권고 검토의견을 발주기관에 전달(온라인 의견등록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으로, 그 외 메일 또는 공문발송)
- ③ 발주기관에서는 개선권고서를 확인 후 제안요청서(RFP)에 반영여부를 검토
- ④ 발주기관의 검토결과 미수용의 경우 그 사유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수용의 경우 별도의 수용여부 통보 없이 즉시 제안요청서 보완 후 입찰공고 추진
* 온라인 의견등록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으로, 그 외 메일 또는 공문발송
- ⑤ 사전규격을 공개하지 않은 조달청 사업 및 기관 자체발주 사업의 경우 입찰공고기간에 SW사업을 수집하여 법제도 준수여부를 점검
- ⑥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권고 검토의견서를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발송
- ⑦ 발주기관에서는 개선권고서를 확인 후 제안요청서(RFP)에 반영여부를 검토
- ⑧ 발주기관의 검토결과 수용의 경우 제안요청서 보완 후 재공고하고 1개월 이내에 수용여부를 공문으로 회신하며, 미수용의 경우 그 사유를 1개월 이내에 공문으로 회신



■ 관리·감독 대상 SW법제도 및 판단기준

★

SW산업진흥법 소관

타법 소관

No	대상제도	법적 근거	판단기준
★1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0조제2항·제13조의2 · 분리발주 대상 SW(고시) · SW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고시)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 규정(조달청 훈령 제6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인 SW사업에서 상용SW 도입이 있는 경우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또는 5천만원 이상이며 소프트웨어품질인증·NEP 등 국가 인증을 획득한 5종의 제품 · 분리발주 예외사유 적용시, 제안요청서 등에 제외사유서 첨부 여부 및 제외사유의 적절성 여부 · 분리발주 대상 SW를 경쟁입찰(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예외)로 구매하는 경우 BMT 실시 및 결과 반영 명시 여부
★2	대기업 참여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4조의2 · 대기업인 SW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이하 고시) · 대기업의 공공SW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사업금액에 따른 대기업참여제한 적용 및 입찰참가자격 명시여부 · 상출제기업 참여제한 명시여부 · 예외사업 해당 시 명시여부
★3	사업금액하한 적용기준 (일괄발주/장기계속 유지보수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4조의2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통합하여 일괄 입찰하는 경우 낮은 사업예산으로 적용여부 · 장기계속계약인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총 사업금액의 연차별 평균금액으로 참여제한 적용여부 · 장기계속계약인 유지보수사업이면서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통합 발주하는 경우 각각 사업별 연차별 평균금액을 산출하고 그 중에서 낮은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4	대기업 공동수급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 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5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참여가능한 사업(사업예산 80억원이상 또는 예외사업)에서 대기업간 공동수급 금지 명시여부
★5	하도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0조의3 · 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반드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도록 명시여부 · 하도급 비율(50%초과) 제한 및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명시여부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여부 · 하도급 계획서(입찰시 계약체결시) 제출 요청 명시여부 · 하도급 비율 10%초과 시 공동수급제 구성 요청 명시여부
6	원격지 개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8조의2 ·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2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제4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협의결정 명시 여부 · 작업장소비용의 사업예산 계상여부 · 작업장소에 관한 보안요건 명시여부 및 계약상대자에 의한 작업장소 제제와 우선 검토 절차 명시 여부
7	SW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14조의2 ·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6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제6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원칙 명시여부 · 국방·국가안보 등 이유로 발주기관 귀속 시 그 사유를 명시하였는지 여부 · 누출금지정보 등 보안관련 사항 및 계약 목적물의 반출 절차 등의 명시 여부

8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SW가 타 기관에 공동활용 되는지 사전에 안내하고, 공동활용 시 타 기관을 명시하였는지 여부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0조의5 ·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수후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여부 · 적법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내 명시여부 (범위를 넘은 사항은 유지관리에 해당)
10	특정규격 명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기재부 계약예규) 제5조 제4항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상표 또는 모델· 규격 등 명시여부
11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 · 법 제20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산업인 SW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낙찰자결정) 채택여부
12	기술능력평가비중 (90%)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재부 계약예규) 제7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방식 적용사업에서 기술능력 대 가격 점수 비중을 90:10로 제시여부
★13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0조제4항 · SW 기술성 평가기준(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능력평가 시 평가기준을 SW기술성 평가기준을 적용· 활용하였는지 여부 ·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를 30점 이하로 준수하였는지 여부
★14	SW사업 제안서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1조 ·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억원 이상의 SW사업에서 제안서보상에 대한 명시 여부 (단, 유지보수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영환경 구축사업은 제외)
15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보수와 혼용하여 '무상유지보수' 사용여부 ·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유지보수 사항 (범위내)을 하자보수로 명시하는지 여부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7조 제3항·제9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투입인력 관련 사항 명시 불가능
★17	요구사항 상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0조제3항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4조 제1항· 제7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사업의 상세요구사항 작성표 사용여부
18	SW사업 적정사업기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융합법* 제23조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명시 및 종합 산정서 첨부 여부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19	SW사업 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4조의2 · 시행령 제12조의2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4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여부
★20	SW사업정보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2조 제2항,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개발·재개발·유지보수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SW사업 정보 제출 명시 여부

■ 관리·감독 항목별 법제도 준수가이드

1) SW 분리발주 및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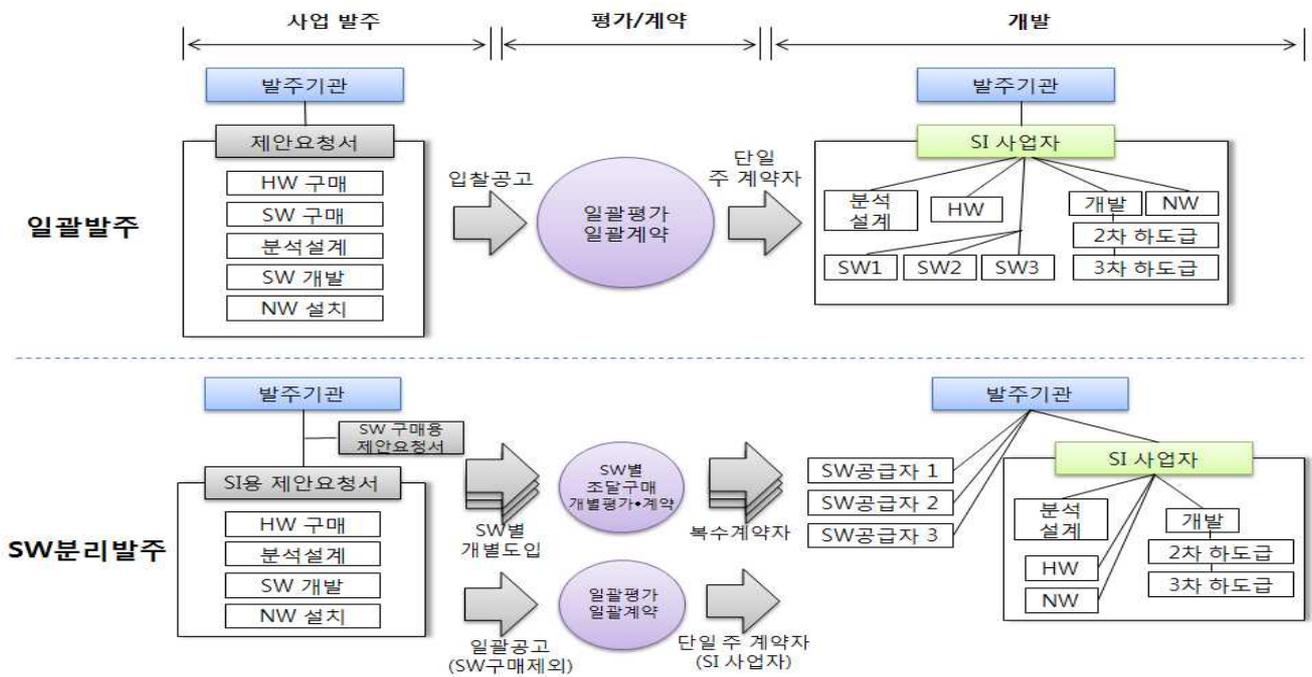
SW 분리발주

< 발주기관 준수사항 >

- SW 분리발주 대상사업의 경우 분리발주 여부를 명시하고, 일괄발주 하려는 경우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서식 '분리발주 대상 SW 품목별 제외사유서' 첨부

○ 개요

- 일정 규모 이상의 소프트웨어 도입이 포함된 사업에서 상용SW만을 별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계약 실시



○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7조,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조의2(조달청 훈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조의2(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사유 사전검토 요청) 수요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비고 7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 제외 소프트웨어에 관한 조달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사유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 신청서(공문)
2.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3. 소프트웨어 가격산출내역서
4.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별지 제2호의2서식]

o 적용 대상

1차 조건	2차 조건
5억원 이상(VAT 포함) 사업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포함된 경우(5천만원 미만 포함) -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 SW 다량 구매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 SW 품질 인증(GS), CC, NEP, NET 및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SW가 포함된 경우

* 1차 조건 충족 시 2차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분리발주 대상 사업

o 적용 예외

- SW 분리발주로 기존 또는 신규 시스템과의 통합 불가능, 현저한 비용 상승 초래, 사업기간 내에 완성 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지연, 현저하게 비효율적일 경우 제외 가능
- 단, 제안요청서에 제외사유서를 첨부(조달발주 시, 조달청장에게 제외사유 타당성 검토 사전 요청 의무*) 하여야 하며, 제외사유서의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4조제2항,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조의2

제안요청단계에서의 SW 분리발주 관리감독 결과와는 달리, 추후 분리발주 실시 및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조사 등을 통하여 그 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SW 분리발주를 통하여 아래의 제품을 별도로 구매한 후 제공할 계획임

- (예시) 분리발주 통한 도입 예정 SW 내역

번호	SW 품목	수량	도입방법	비고
1	DBMS	4식	분리발주(입찰공고)	
2	백업소프트웨어	3식	분리발주(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3	EDMS	2식	일괄발주(제외사유서 참조)	
4	통합모니터링 솔루션	1식	일괄발주(5천만원 미만)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SW분리발주 SW도입시점에 "상호협약계약서", "조정사항 이행 약속서",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제출

o 분리발주 대상 SW 품목별 제외사유서 작성 예시

[별지서식]

(예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번호	SW 품목	수량	제외사유	비고
1	DBMS	2식	000시스템의 통합사업으로 서버구축시 시스템 간의 상호연계성이 높아 분리발주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 - 서버교체 또는 시스템고도화에 따른 라이선스 도입	조달청 사전검토 완료
2	WEB	2식	000시스템의 통합사업으로 서버구축시 시스템 간의 상호연계성이 높아 분리발주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 - 서버교체 또는 시스템고도화에 따른 라이선스 도입	조달청 사전검토 완료

o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 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아래 품목에 대하여 별도 분리발주를 통하여 제품을 구매한 후 제안사에 제공할 예정임
 - 도입 예정 SW 품목

No	SW 품명	수량	비고
1	서버보안	2식	일괄발주(제외사유서 참조)
2	DBMS	1식	일괄발주(제외사유서 참조)
3	ESB 연계솔루션	3식	일괄발주(제외사유서 참조)
4	백업SW	2식	분리발주(BMT 실시)
5	WAS	2식(16core)	조달쇼핑몰 구매
6	APM 및 WAS성능관리	2식(16core)	조달쇼핑몰 구매
7	보안관제	2식	조달쇼핑몰 구매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제외사유	비고
서버보안	2식	특정SW를 바탕으로 기 개발되어있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바 다른 제품 도입 시 시스템 재개발에 따른 비용 상승과 표준화 문제발생	조달청 사전검토 완료
DBMS	1식	서버 구축시 시스템간의 상호연계성이 높아 분리발주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 상승 초래	조달청 사전검토 완료
ESB 연계솔루션	3식	각 프로그램이 상호 연계·통합 구현되어야 하며 분야별로 광범위하게 복합적인 작업이 필요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원활한 통합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품질보장,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괄발주 추진	조달청 사전검토 완료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발주기관 준수사항 >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사업의 경우 평가시험 실시여부 명시

○ 개요

- 경쟁입찰을 통한 분리발주 대상 SW 구매 시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의무화(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 의뢰)
-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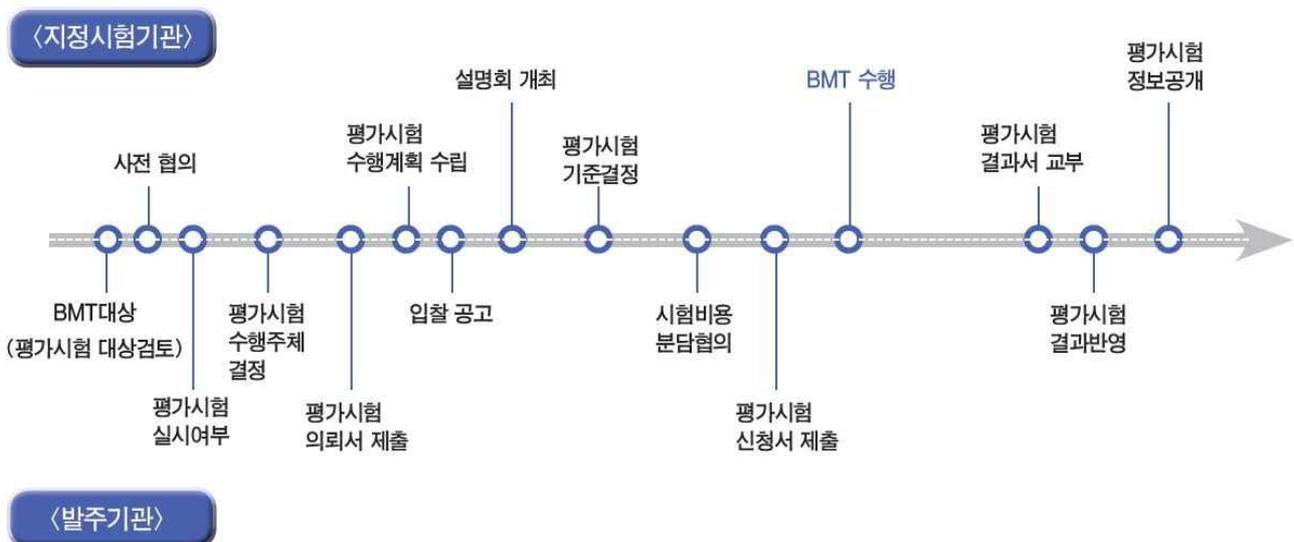
제13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적용 대상

- 경쟁 입찰을 통하여 분리발주 대상 SW를 구매하는 사업
(이미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평가시험을 받은 결과가 있는 경우 종전 시험결과를 활용 가능하며,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은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 요청)

○ 적용 예외

- 소프트웨어 제품 구매 금액이 5천만원(VAT 포함) 미만이거나 소규모사업으로 시험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과 시험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평가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o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매에 반영함

[반영 예시 1]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로 하며, 각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는 제안평가 00%,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결과 00%로 구성

[반영 예시 2]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로 하며, 각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성평가항목 중 기능성과 효율성 부분에서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점수 100% 반영

o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BMT 실시 사업 >

-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의2 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함
 - 다만, 지정시험기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으로부터 동일한 SW에 대해 기존에 시험결과가 있을 경우 활용할 수 있음
- o 종합평가점수는 기술평가 90%, 가격평가10%로 산출하며, 기술평가는 제안평가 30%, 평가시험 70%로 구성
- o 평가시험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주관으로 실시하며, 평가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명회 시 별도 안내 예정임

< BMT 미실시 사업 >

- o SW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시험기관의 장과 평가시험 사전협의를 통해 평가시험을 미실시 함

품목	실시여부	평가시험 미실시 사유	평가시험기관 검토의견
SSO	미실시	해당 솔루션의 개별단가는 6백만원으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에 따라 시험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판단	사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SW 구매와 관련하여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2) 대기업 참여제한

< 발주기관 준수사항 >

- 제안요청서 작성 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적용 명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입찰 참여 제한 명시

○ 개요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하한 적용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 계약체결일 기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경우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제한
-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함

○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7조의4·제17조의5·제17조의6,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015.12.22.>

2.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3. 국방·외교·치안·전력(專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범위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적용 대상

-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

○ 적용 예외

-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조달청 통한 발주사업에 한함)
- 국방·외교·치안·전력, 그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사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

공공기관명	해당 사업범위
한전케이디엔(주)	○ 전력관련 소프트웨어사업 (단,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이외의 총무, 인사, 노무, 일반행정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및 디지털 변전소 관련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 ○ 전력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사업
코레일네트웍스(주)	○ 교통카드 정산 소프트웨어사업 ○ 역무자동화설비 소프트웨어사업

○ 유의사항

- 이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 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 제안요청서 등에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상출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을 명기하여 계약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의 예외인정은 '15년부터 적용되지 않음(2015.12.22. 법 개정 시 삭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예외사업을 적용할 경우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제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정절차 참고
-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의 경우 하도급 등에 대해서도 대기업 참여제한이 동일하게 적용
- 사업 금액에 따른 기업의 입찰참여 가능 여부는 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p>< 사업 금액에 관계없이 공통 명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p style="text-align: center;">< 사업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예산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 사업 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인 기업(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 사업 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 >

-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 40억'으로 확인),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만 참여 가능

< 사업 금액이 80억원 이상인 사업 >

- 본 사업은 80억원 이상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 40억, 80억'으로 확인)의 입찰 참여 가능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항,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예외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도 참여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 및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포함)의 참여 허용

<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사업 >

- 본 사업은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포함)의 참여가 허용된 사업

○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16.4.20)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중소기업자(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가능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16.4.20)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80억 이상 사업으로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가능하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가능한 사업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산업 분야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가 가능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정 승인)

3) 사업금액하한 적용기준(일괄발주/장기계속 유지보수 계약)

< 발주기관 준수사항 >

- 각각의 SW사업을 하나로 묶어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단위사업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기업 참여하한을 적용하고 관련 조항을 입찰공고문이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미적용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4항))
- 유지 및 보수에 관한 SW사업 중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연차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대기업 참여하한을 적용하고 관련 조항을 입찰공고문이나 제안요청서에 명시

○ 개요

-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 각 단위사업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가능한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
-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인 SW유지 및 보수사업은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

○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015.12.22.>

2.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3. 국방.외교.치안.전력(專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범위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의사항

- 일괄발주 시 사업금액 산정 방법

(예) A사업 15억원, B사업 50억원을 일괄발주 하는 경우

- 총사업비는 65억원으로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까지 참여를 허용(X)
- A사업비가 15억원이므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여 가능(O)

-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인 SW 유지보수사업의 사업금액 산정 방법(과기정통부 유권해석, '15.4.20)
 - (예) 유지보수사업인 A사업(총 부기금액 90억원, VAT포함)은 계약기간이 '15년 7월~'17년 6월까지로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 총계약기간 : 24개월(2년) (총계약연수 : '15년, '16년, '17년 (3년))
 - 연차별 평균금액 : (90억원 / 24개월) X 12개월 = 45억원
 - 대기업참여하한금액 적용 : 40억원 이상의 사업에 해당되어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까지 입찰참여 가능
- 장기계속계약인 유지보수사업이면서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통합 발주하는 경우 각각 사업별 연차별 평균금액을 산출하고 그 중에서 낮은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 (예) 계약기간이 '15.1월~'17.6월까지인 사업을 장기계속계약으로 A사업 30억원, B사업 100억원(총사업비 130억원)을 일괄발주할 경우
 - 낮은 사업금액인 A사업의 연차별 평균금액이 12억원*이므로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입찰참여 가능(O)
 - * A사업의 연차별 평균금액=(30억원 / 30개월) X 12개월 = 12억원

o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둘 이상의 SW사업을 일괄발주하는 사업 >

-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A시스템 개발 10억원, B시스템 개발 35억원으로 가장 낮은 단위사업 금액인 A시스템 개발 10억원을 기준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

<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인 SW 유지 및 보수 사업 >

- o 본 사업은 2개 연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 형태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연차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
 - 하한 금액 산정: 2,436,582,500원 = (4,873,165,000원/24개월)*12개월

< 둘 이상의 SW 유지 및 보수 사업을 일괄발주하는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 사업 >

- o 본 사업은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을 일괄발주하는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각 사업 중 낮은 사업금액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
 - 하한 금액 산정: 1,200,000,000원 = (3,000,000,000원/30개월)*12개월 (가장 낮은 단위사업 금액 기준)

o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둘 이상의 SW사업을 일괄발주하는 사업 >

- o 본 사업은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 홈페이지 개선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참여가 제한됨

<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인 SW 유지 및 보수 사업 >

- o 본 사업은 2년 장기계속계약 유지보수 사업으로 1년단위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해당하는 대기업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입찰참가를 제한함

4)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 발주기관 준수사항 >

- 제안요청서 작성 시 대기업참여를 허용할 경우,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명기

○ 개요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 받는 대기업 중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간 공동수급체 참여 제한

○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제2항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5조(발주준비) ②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에서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건 등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적용 대상

-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가능한 소프트웨어사업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가능한 소프트웨어사업 >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제2항에 따라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군의 공동수급방식 입찰참여를 제한

< 공동수급 불허 사업 >

- 공동수급 참여 불허

○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가능한 소프트웨어사업 >

-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 수급은 가능함. 단,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자간의 공동수급은 금지(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5조제2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공동수급 불허 사업 >

- 공동수급 참여 불가

5) 하도급 제한

< 발주기관 준수사항 >

- 제안요청서 작성 시 아래 사항에 대해 명시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불허를 명시할 경우 불필요)
 - 하도급 사전승인
 - 하도급 비율 제한(50% 초과) 및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하도급 계획서 제출(입찰 시, 계약체결 시)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가감조정된 경우 가감조정된 기준)
 - 사업금액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에 대해 공동수급체 요청 시 명시

○ 개요

- 공공 SW사업에서 하도급에 대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을 제한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하도급을 하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8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0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7조(하도급 승인 신청) · 제38조(하도급 승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2.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하도급받은 사업의 품질 또는 수행 능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과업의 변경 등 하도급받은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제2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이하 생략)

○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상에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 등 관련 문구 명시는 불필요
- 법 제20조의4에 따라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하도급 제한 범위를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등을 위반한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확인)에 따라 발주기관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통보
- 발주기관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제출받아 지급내역 일치여부 확인

o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하도급 허용 사업 >

o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o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o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o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o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불허 사업 >

o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6) 원격지 개발 활성화

< 발주기관 준수사항 >

- 제안요청서 작성 시 작업장소 등의 상호협의 결정을 명시하고,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경우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에 대해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 여부를 명시
- 제안요청서 작성 시 작업장소에 관한 보안요구사항을 명시하고, 공급자가 요구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우선 검토함을 기재

○ 개요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
-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작업장소 협의 시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공급자(수주기업)가 제시하는 장소를 우선 검토하도록 함

○ 법적근거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2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41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8조의2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제2항의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작성시 다음 각 호의 근거에 따라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계상한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비(지급임차료)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정의된 직접경비(현장운영비)

④ 사업자는 당해 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제4항에서 정하는 작업장소 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를 정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8조의2(작업장소 등)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유지관리를 제외한다)에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제1항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제1항에 따른 작업장소 협의 시 공급자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작업장소에 대하여 보안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공급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향후 기술협상 등의 과정에서 상호협의하여 발주기관 사업장에 작업장소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경우 작업장소 이외에도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한 제공여부 및 비용부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협의해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과 같이 정보시스템의 위치에 따라 작업장소 등이 결정되는 사업의 경우 포함

- 국가기관등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향후 협상이나 사업 이행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에 대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o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o 작업장소 상호협의

- ①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②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③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o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o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①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②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유 의 사 항 >

※ 아래 내용은 ‘원격지 개발 관리가이드’ 및 실제 발주사업 보안요구사항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예시>에 불과함.

* 발주기관에서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환경 등에 맞게 관련 지침” 등을 참고하여 보안요구사항을 작성하여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NIA) 및 보안 관련 기관 내규 등 참조

■ 보안활동은 일반적으로 “① 기술적, ② 물리적, ③ 관리적” 으로 구분되므로, 이에 따라 요구사항을 작성하되,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은 보안 요구사항(SER-000)에,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관리적 요구사항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000)에 작성

* 구 분	내 용
①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SER-000]	시스템 접근제어(패스워드), 프로그램 안정성, 표준보안 API, 암호화, 개발 프로그램 등에 대한 보안취약점, 보안사항의 (사전)점검 및 조치,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등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작성
②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PMR-000]	인력, 시설, 설비, 조명, 보안요원, 시스템 등 수행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및 물품 반출·입통제, 시건장치, 도청 방지 및 탐지, 재난의 예방 및 대응 등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작성
③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PMR-000]	보안등급분류, 문서보안등급 지정, 정보보호 체계 및 절차, 보안조직, 사고 대책 등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작성

o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o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o 유지관리 수행 장소는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공단본사 인근으로 하며, 그 외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o 상주인력은 공사에서 무상 제공하는 지정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상주인력의 작업 장소 및 작업을 위한 기본 장비는 공사에서 제공한다.

7) SW산출물 활용 촉진

< 발주기관 준수사항 >

- 제안요청서 작성 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한다고 명시하고 사업 관리 시 준수
- 제안요청서 작성 시 SW산출물 반출 절차에 대하여 명시하고 사업관리 시 준수

○ 개요

- 당해 계약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 공동소유 원칙
- SW 산출물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공급자는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및 누출금지제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공

○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60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14조의2

[국유재산법]

-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국가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국가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 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 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 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 ① 공급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각 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누출금지정보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가 반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적용 대상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 적용 예외

-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정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 귀속 시 정당한 귀속사유 명시 혹은 계약당사자에게 개작권 부여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OOO"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정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로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정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8)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발주기관 준수사항 >

발주기관은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 여부를 사전 안내하고,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활용 대상기관의 범위를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사전에 명시하여야 함

o 개요

- 당해 계약으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를 발주기관이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

o 법적근거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o 적용 대상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o 유의사항

- 공동활용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계획이 없음을 제안요청서에 명시

o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o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o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000을 위한 목적으로 000, 000, 000 의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있음

o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o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 o 본 용역 사업은 공익 목적으로 비영리로 가시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출물(가시화 소프트웨어)은 산학연 기관 및 소속 이용자, 개인 연구자 등에게 공동 활용됨
- o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농업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〇〇〇〇〇 및 그 소속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있음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발주기관 준수사항 >

제안요청서 작성 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 이내, 하자보수범위내의 책임을 부여하고 사업관리 시 준수

o 개요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부과

o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5,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5(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 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0조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 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의사항

- 사업(계약) 종료 후 하자담보책임을 벗어난 요구사항을 기재하지 말아야 함

<예시>

- (최신 버전으로) 무상업그레이드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개발자 상주, 시범운영 지원
- (구축된 정보시스템, 상용SW) 정기 점검
- 정보시스템의 사용방법(UI 등) 및 기능 개선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정 변경 및 최적화
- 정보시스템의 설치장소, 규정, 정부표준 변경으로 인한 SW의 변경(커스터마이징, 연계 등) 요청 지원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SW사업으로만 구성된 사업 >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SW와 다른 사업이 혼재된 사업 >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류 후 1년 이내로 하며,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해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 하자보수 유지관리 수행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한다. - 장애발생시 2시간이내 방문 4시간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모든 납품 제품은 제조사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이전에 자산물품등록을 위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술지원확약서, 라이선스, 하자보증증서, 조달청물품식별번호문서

10)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발주기관 준수사항 >

입찰공고 시 특정상표, 규격, 모델을 지정하지 않아야 하며, 물품 납품 시에도 특정상표,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납품 거부 불가

o 개요

- 소프트웨어 도입이 포함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도입 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및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등의 행위를 금지

o 법적근거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조제4항제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

제5조(제한기준)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 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

- 7) 입찰공고나 설계서·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o 유의사항

- 사업 발주 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을 실시하되,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규격서 작성 단계에서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협약 내용(협약서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18면 등)

<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시 유의사항 >

- o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추진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규격 등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
 - * 법률에 따라 지정·공고·등록된 특정 제품(기업)을 구매하는 경우,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특정인만 공급 가능한 경우 등(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 중 일부)
- o 상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특정규격 명시 금지 관련 법·제도 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으므로,
 - ①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서 특정규격을 명시하는 사유를 입찰서류에 명시하거나 (가능 시),
 - ② 권고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수의계약 적용 근거자료(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제시하여 불필요한 행정소요 예방

○ 특정규격 명시 점검항목

- 업체명, 모델명 명시 금지
- 특정제품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어 명시 금지
예) RAC(특정 DBMS의 기술사양에서만 사용되는 용어) 지원
- 특정제품만 가능한 기능, 성능 명시 금지
예) 개발언어 : ASP (특정 OS 기반의 WEB 개발 언어)

○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DBMS

품 명	규 격
DB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랜잭션 처리의 무결성, 데이터 저장의 안정성과 빠른 검색 - 분산 데이터 처리 기능, 범용 SQL 지원 - 표준 관계형 DBMS 플랫폼 지원 -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의 증가에 따른 유연한 확장성, 안정성 제공 - 다수 동시 사용자 처리 성능 보장

○ 가상화 솔루션

품 명	규 격
가상화 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버 운영의 효율성 및 관리성 향상을 위하여 논리적 통합 및 자원의 공동 활용 등 통일된 서버 관리가 가능해야 함 - 정보서비스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무중단 운영이 가능해야 함 - IDC 공간활용, 전력,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교체비용 등 IT예산을 절감 할 수 있어야 함 - H/W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및 신규 정보시스템에 대한 서버 요청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한 유연한 서버 운영이 가능해야 함 - 향후 우리 정보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적용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축 및 설계해야 함

○ 리포팅 솔루션

품 명	규 격
리포팅 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포트 양식 파일과 데이터를 연계하여 결과 리포트를 생성 - 다양한 인포그래픽 환경을 구현 및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 - 국제 웹 표준 준수 - 하나의 문서에 원하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배열할 수 있고 리포트 포맷 변경 시 활용가능 해야 함 - 다양한 PC의 OS 및 브라우저 지원 - GS 인증 제품 - 기관에서 운영중인 업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상호 호환되어야 함

11)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 발주기관 준수사항 >

제안요청서 작성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을 명시

o 개요

- 소프트웨어사업 등 지식기반사업의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사업 등 지식기반사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

o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o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o 낙찰자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시 추가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항목 >

협상적격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인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을 명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인 경우도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을 명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 적용대상 :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적용한 사업

○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자를 선정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40호, 2016.1.19.)을 적용합니다.
- 사업자 선정방식 : 일반공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12)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발주기관 준수사항 >

제안요청서 작성시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90%를 적용

○ 개요

- 제안서 평가 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이때 기술능력 평가의 비율은 90%로 정함

○ 법적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조·제7조

제18조(평가배점)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
2.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9호) 제5장 제3절에 따라, 제안서의 평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 가능
- 불필요한 개선권고, 통지 등의 예방차원에서 상기 지침에 따라 80:20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 비중이 50%이상, 내부규정(근거 규정 제시) 등임을 반드시 명시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함
-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13)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발주기관 준수사항 >

-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고시를 기준으로 SW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제안요청서에 명시
- 단, "품질보증" 평가항목과, 대기업/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하고 하도급을 허용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상생협력",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 항목을 반드시 포함

○ 개요

-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 및 상용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하여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기준 마련

○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4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1조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적용 대상

-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소프트웨어사업

○ 유의사항

- 평가항목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 가능
-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고 각 평가부문별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10점 이상
-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사업인 경우,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부문 중 '상생협력' 평가항목을 제외하고 타 평가부문으로 해당 배점 조정 가능
- 하도급 불허 사업인 경우,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부문 중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항목을 제외하고 타 평가부문으로 해당 배점 조정 가능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용

○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기술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절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기술 및 기능 (25점)	시스템 요구사항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 도입대상 장비의 확장 편의성 -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용이성 - 도입대상 장비의 관련 인종획득 여부 - 도입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대응방안의 구체성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제약 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성능 및 품질 (20점)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p>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p> <p>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프로젝트 관리 (20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 관리,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는지를 평가하며, 또한 문제 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 방안의 적정성(해당 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개발 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프로젝트 지원 (10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관련인증 획득 여부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유지 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10점)	상생 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의 적정성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
	하도급 계약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등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한 단계 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기술 부합성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 보유기술 실현가능성 -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 평가부분별 점수 계산식 : 평가부분별 점수 = $\sum_{k=1}^n$ 평가항목 배점_k × ($\frac{\text{평가항목의 취득 등급 값}_k}{\text{평가항목의 등급최고값}_k}$)

※ k는 평가부분의 개별 평가항목임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	평가 등급
50% 이상	5등급
45% 이상 ~ 50% 미만	4등급
40% 이상 ~ 45% 미만	3등급
35% 이상 ~ 40% 미만	2등급
35% 미만	1등급

14) SW사업 제안서 보상

< 발주기관 준수사항 >

총 사업예산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체결 시 제안서 보상규정을 검토하여 '우수 제안서에 대해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 여부 명기

o 개요

- 20억원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 보상 실시

o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제3조·제5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7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2조

제21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o 적용 대상

- 2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사업

o 적용 예외

- 유지보수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

o 유의사항

-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은 제안서에 대해 무단으로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의 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술협상 등의 과정에 활용은 지양
- 다만, 제안서 보상을 한 제안서에 대해 발주기관은 제안자의 동의 없이 활용 가능

o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제3조·제5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음

o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제안서 보상 실시 명시>

-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음
- o 기술평가 시 제안서 보상대상 의결에 따라 보상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며, 보상비의 총 규모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 보상 미실시 명시>

-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o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o 본 사업은 HW구축 사업에 해당되므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 o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15)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 발주기관 준수사항 >

제안요청서 작성 시 유지관리와 하자보수를 명확히 구분하고 하자보수는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담보책임이 있으나 유지관리는 검수 또는 설치확인 직후 별도 계약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명시

o 개요

- 유지관리는 무상으로 요구할 수 없으며 '무상유지보수(관리)' 명시하거나 유지보수사항을 하자보수의 범위로 포함하여 명시하지 않도록 제한

o 법적근거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조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0조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유의사항

-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한 하자과 과업내용서상에 반영되지 않는 기능개선,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해당하므로 하자보수로 요구할 수 없음
- 하자보수가 아닌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4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계약 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체결을 해야 하므로 "인수직후 계약체결" 문구 명시
- "유지보수" 용어는 위기관리대책회의(2012.06,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에 따라 "유지관리"로 표기

o 위기관리대책회의(2012.6.26., 제22차),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

- ① 용역계약일반조건상 유지관리 항목*은 검수 또는 설치확인 직후 계약체결
 * 과업내용 외 기능개선, 사용방법 개선 요구사항 추가, 하자보수기간 이후 하자
- ② 수·발주자간 계약 직후 원·하도급자간 유지관리 계약체결, 발주기관의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가지급여부 확인
- ③ 유지보수와 하자보수의 용어 혼재사용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지관리'로 명칭 변경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발주기관 준수사항 >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 제안요청서 내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명시 불가능

o 개요

- SW사업에 대한 산출물 품질중심의 사업관리, SW인력 처우개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수행 시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투입인력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하거나 관리할 수 없음 (발주기관은 핵심 인력에 대한 투입인력 계획도 명시하여 요구·관리할 수 없음, '18.8.22부터 시행)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개정 전 고시 내용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개정 고시('18.8.22 시행) 내용
SW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로 산정한 SW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수행 시 투입인력의 수,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관리할 수 없음. 단, 필요한 경우 핵심 인력에 대한 투입인력 계획을 명시하여 요구·관리할 수 있음	SW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로 산정한 SW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수행 시 전면적으로 투입인력의 수,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관리할 수 없음 핵심인력에 대한 투입인력 계획도 명시하여 요구·관리할 수 없음

o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7조제3항·제9조제3항 ('18.8.22부터 시행)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7조(제안요청서 준비) ③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공급자관리) ③ 발주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사업대가를 산정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는 투입인력의 수 및 투입기간 등을 관리할 수 없다.

o 적용 대상

- SW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

o 적용 예외

-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RP) 등],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SW 운영사업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 등

o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내 **제안서 작성지침,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 평가항목, 기타 첨부문서** 등의 항목에서 투입인력 관련 사항(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 **투입인력의 경력(예) 사업수행책임자(PM)는 ○년 이상 동종 업계 종사자, 사업수행관리자(PL)는 해당 업무 수행경험이 있는 자 등**을 요구하는 경우 투입인력 관련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투입인력의 관리(예) 출퇴근 등 근무상태 관리, 투입인력 교체 시 발주기관 승인 등**을 요구하는 경우 투입인력 관련 사항을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7) 요구사항 상세화

< 발주기관 준수사항 >

제안요청서 작성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분석하여 명시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 정보센터 > SW제도자료실에서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다운로드 가능

o 개요

- 제안요청서에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명시·공개

o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4조제1항·제7조제1항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분석·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예산편성·발주 및 계약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o 적용 대상

- SW개발사업, 시스템운영환경 구축사업, 유지관리 사업,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컨설팅사업 포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사업 등

o SW사업 유형별 상세 요구사항 분류 가이드

사업유형	요구사항 분류
SW개발	①시스템 장비 구성 ②기능 ③성능 ④인터페이스 ⑤데이터 ⑥테스트 ⑦보안 ⑧품질 ⑨계약사항 ⑩프로젝트 관리 ⑪프로젝트 지원 등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①시스템 장비 구성 ②기능 ③성능 ④인터페이스 ⑤데이터 ⑥테스트 ⑦보안 ⑧품질 ⑨계약사항 ⑩프로젝트 관리 ⑪프로젝트 지원 등 (②기능 ④인터페이스 ⑤데이터 요구사항은 선택사항이므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선별하여 적용 가능)
유지관리	①유지관리 수행 ②유지관리 인력 ③보안 ④품질 ⑤계약사항 ⑥프로젝트 관리 ⑦프로젝트 지원 등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컨설팅 포함)	①컨설팅 ②계약사항 ③프로젝트 관리 ④프로젝트 지원 등
DB구축 또는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①DB구축 또는 콘텐츠개발 ②데이터 ③테스트 ④보안 ⑤품질 ⑥계약사항 ⑦프로젝트 관리 ⑧프로젝트 지원 등 (②데이터 요구사항은 ①DB구축 또는 콘텐츠개발 요구사항에 포함 가능)

* 단, 요구사항 분류기준은 개별 사업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o 작성 양식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별지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예시 : 기능요구사항 - 00X)
요구사항 명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

o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전체 요구 사항 중 기능요구사항에 대한 상세 작성 사례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 정보센터 > SW제도자료실)에서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적용 제안요청서 사례 참조

o 요구사항 구분 및 총괄표 ('범정부 행정 협업체계(지식경영) 구축 2단계' 사업 제안요청서 발체)

구분	설명	요구사항 개수
①시스템 장비 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②기능-FUN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 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7
③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④인터페이스-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2
⑤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⑥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 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함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⑦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⑧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8
⑨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4
⑩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0
⑪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4
합계		53

○ 요구사항 목록표(기능요구사항)

순번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기능 요구사항	SFR-001	온-나라 지식 기능 고도화(포털)
2		SFR-002	온-나라 지식 기능 고도화(유관시스템)
3		⋮	⋮
4		⋮	⋮
5		⋮	⋮
6		SFR-006	온-나라 메일 고도화(메일)
7		SFR-007	기관별 KMS통합

○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온-나라 지식 기능 고도화(포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포털고도화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털 UI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나라 지식 사용자 친화적 기능을 고려한 메뉴 구성 및 사이즈 개선 - 온-나라 지식 전용 스킨 추가 제공 (3종) ○ 포털의 다양한 포틀릿 기능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관리자가 수집한 지식을 메인 화면에 표출하는 포틀릿 제공 - 기존 업무포털의 티커 포틀릿을 개방형 으로 제공 - 아이콘 및 미니배너 나열식 SSO링크 포틀릿 제공 - 간단 이미지 썸네일 포틀릿 제공 이미지형 게시판 연계) - 팝업 공지사항 기능 개선 (오늘 하루 안보기 기능 추가) - 온-나라 지식 우수 활용 랭킹 기관 (부서, 개인) 포틀릿 개방형으로 제공 - 랭킹에 표시된 기관, 부서, 개인의 상세 마일리지 현황 팝업 제공 - 인기 검색어 클라우드 포틀릿 개방형 제공 (클릭 시 검색화면으로 자동 연결) - 관심 키워드와 연관된 키워드 추천 포틀릿 개방형 제공 (개인이 등록한 관심 키워드의 연관어를 추천으로 제공, 클릭 시 검색화면으로 자동 연결) ○ 온-나라 지식 지식광장 기능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나라 지식 지식광장 검색일 제약을 유형별로 설정하는 기능 제공 (현재 전체 30일 제약됨). 필요시, 성능 최적화를 위해 기존 테이블을 각 유형별 테이블로 분리 - 개인별 지식 이용 현황 그래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별 지식 이용 현황 그래프 제공 - 기관별 지식 이용 현황 그래프 제공 - 지식맵(유형, 조직, 기능)별 지식 현황 그래프 제공 <p>○ 게시판 기능 고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 등록 시 필요한 기본정보의 자동입력 기능 제공(부서정보, 전화번호, 이메일 등) - 게시글에 대한 보안 설정 옵션 제공 - 글 등록 시 제목에 하이라이트 등 강조 옵션 제공 - 질의응답 시, 대기-답변-완료 유형으로 개선 - 서비스 또는 시스템 간 자연스러운 콘텐츠 이동·공유·활용(사용자의 Copy & Paste 최소화) - 서비스 또는 시스템 간 게시물 이동 시 간단한 주소와 이미지를 첨부하여 공유하는 기능 제공 <p>○ 게시판 부가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쉽게 게시물 내용을 게시판 간에 이동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제공 (슈퍼관리자용) - 생성된 게시판 템플릿을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파일형태의 다운로드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화면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온-나라 지식 기능 고도화(유관시스템)
정의	유관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상세 설명	<p>세부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SO 확장성 고려한 추가 및 수정 가능한 관리페이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호화 옵션지정 (Base64, Aria, DES, 3DES, Sha256 등) - 목적지 URL, 파라미터 이름 및 세션 값 설정. ○ 인터넷 온-나라 지식 (kms.go.kr)으로 게시글 전송 및 수신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온-나라 지식과의 연계 설정 관리화면 제공 - 특정 커뮤니티 게시판을 인터넷 온-나라 지식과 연결하는 기능 제공 (필요시, 관리자의 승인 하에 전달) ○ 조직도 연동 연계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DAP과 조직도 연계 시 온나라 문서에서 생성된 임시 부서를 온-나라 지식 임시부서로 자동 생성하는 기능 제공 (역방향 없음) - 임시부서 동기화에 따른 정합성 체계 마련 - 부서생성 제외자 목록 제공 ○ '15년 개방형 온-나라 사업으로 신규 구축된 통합계정 인증체계에 따른 온-나라 지식 사용자 계정 연계·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전입 통합사용자 계정 동기화 - 동기화 시, 온-나라 메일 조직도에 규정보 전달 - 규정보 목록 및 처리 현황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화면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온-나라 메일 고도화(메일)
정의		온-나라 메일
요구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일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일 에디터에 "맑은고딕" 폰트 추가 ○ 메일 발송 기능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일 오발송 방지 (예, 메일 발송 후 일정 시간 내 발송 취소) ○ 메일 보기 기능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일 목록을 날짜, 보낸 사람을 기준으로 모아서 표시 - 송신자 혹은 수신자가 온-나라 메일 사용자일 경우 이름으로 표시하고, 동보메일일 경우 메일목록에서는 "이름 (동보메일수)"로 통일하여 표시 ○ 주소록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받는사람, 참조, 숨은참조에 입력된 주소 배열 그대로 사용자 개인주소록에 저장하고, 추후 메일 작성 시 해당 주소록을 선택하도록 제공 - 선택된 부서의 하위기관 사용자에게도 메일 보내지도록 설정 - 주소록의 사용자 검색 기능 개선 (예. 이름, 기관명 조합으로 검색) - 개인주소록에서 조직도의 사용자를 조회하여 개인주소록의 그룹에 추가 하여 관리하는 기능 제공 ○ 슈퍼관리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설정 변경 이력 (관리자 로그인, 환경 설정 변경 등) - 시스템 오류 현황 모니터링 화면 제공 - 기관별, 부서별, 사용자별 메일 송수신, 로그인 통계 제공 - 기관별 부서 및 사용자 정보 excel(csv) 다운로드 - 기관별, 부서별, 사용자별 메일 용량 현황 제공 (예. 특정 용량 이상 사용자 목록 출력) - 시스템 자원 모니터링 (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량) 화면 제공 ○ 기관관리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내 사용자의 메일 송수신 이력 화면/인쇄/다운로드 - 기관내 사용자의 부서별, 사용자별 메일 송수신, 로그인 통계 제공 - 부서 및 사용자 정보 excel(csv) 다운로드 - 부서별, 사용자별 메일 용량 현황 제공 (예. 특정 용량 이상 사용자 목록 출력) ○ 메일그룹 생성 시 부서단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관리자가 여러 개의 부서명을 선택하여 공유메일함에 메일그룹 생성 - 부서내의 사용자가 변동이 있을 때 메일그룹의 사용자 정보도 현재 사용자 정보로 반영 ○ 수신자 수 제한 없이 기관내 사용자에게 메일 발송 기능 (* 기관 전체 공지메일 보내기 기능과는 별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내 사용자에게 메일 발송 기능은 사용자, 그룹 조합에 관계없이 수신자 수 무제한, 단 기관외 사용자에게 메일 발송 시에는 수신자수 제한 있음 (예. 200명)) ○ 조직도 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에서 적용된 조직도 정보를 큐로 받아 기관단위로 동기화 진행 ○ 인사정보 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에서 적용된 사용자 정보를 큐로 받아 동기화 진행 - 동기화 오류 사용자 목록 제공 ○ SSO 확장성을 고려한 추가 및 수정 가능한 관리페이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호화 옵션지정 (ARIA, 3DES 등) - SSO 접속 가능 IP 등록 관리 ○ 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포털에 온-나라 메일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표준 연계모듈

	<p>개발(UI 포함) 및 연계 기술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SO 웹서비스 연계, 신규 수신메일 개수, 최근 수신 메일 목록 제공 <p>○ 메일쓰기에서 파일첨부 시 및 발송 시 제목 및 본문에 민감 정보 스크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일의 제목, 본문, 또는 첨부파일에 개인 정보가 포함 시 작성자/송신자에게 취소/진행 여부를 물어본 후 선택 - 민간정보 스크린은 사용자 선택에 따라 동작 <p>○ 보관된 보낸/받은 메일 삭제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가 지정한 메일 보관기간이 지나면 오래된 메일을 자동 삭제 기능 (예, 5개월이 지나면 자동삭제) <p>○ 망간연계 모듈 및 인터넷망의 중계서버 장애 발생 시에도 인너넷으로의 메일 발송 운영성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망-인터넷망 망간연계 모듈을 활용한 전송구간 모니터링 및 대응 기능 (차단 또는 지연 발송 등) <p>○ 메일서버 증설에 따른 온-나라 메일 소프트웨어 구축 (1단계 구축 사업으로 도입된 SW 활용한 설치)</p> <p>○ 메일 시스템 전용의 로그인 기능</p> <p>○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메일 UI 개선</p> <p>○ 인터넷망의 온-나라 메일 중계서버에서 메일 배달 실패 시 행정망의 온-나라 메일로 실패 내용 전달</p>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화면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기관별 KMS통합
정의	15개 기관 표준 KMS 구축 (기관별 KMS 통합)
요구사항 상세 설명	<p>○ 기관별 운영 중인 KMS(유사 시스템 포함)를 (15개) 통합 및 데이터 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데이터 분석 - 기관별 지식맵 구성 - 기관별 조직도 구성 - 지식/일반 게시판 생성 - 필요 코드 및 추가 컬럼 생성 - 화면 구성 <p>○ 개별 기관방문 및 데이터 이관은 다음의 절차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기관요구사항 정리 - 2회 요구사항 확정 - 3회 1차 데이터 수령(첨부포함) - 4회 2차 증분데이터 수령 (첨부포함) : 데이터 검증 실시 - 5회 3차 최종데이터 수령 (첨부포함) : 오픈지원 <p>○ 기관관리자 교육용 콘텐츠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관리자를 위한 교육용 동영상 제공 - 길라잡이식 설정 교재 제공 <p>○ 업무포털 제공 서비스를 KMS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일정·재실정보, 자원 회의실예약 등 업무포털의 우수 기능을 표준KMS에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화면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18)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발주기관 준수사항 >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SW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 개요

-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표 3(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를 활용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법적근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6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제23조(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의 합리화)**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 제6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국가기관등의 소속공무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별표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단,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적용 대상

- SW개발과 관련된 과업이 포함된 사업

○ 적용 예외

- SW개발 유형 이외의 사업(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RP)], 운영·유지관리,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디지털콘텐츠 제작, HW/SW 구매[커스터마이징 포함] 등 SW개발이 포함되지 않는 사업)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첨부

○ 작성 양식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별지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적정 사업기간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6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_____ (서명)	위 원 _____ (서명)	
위 원 _____ (서명)	위 원 _____ (서명)	
위 원 _____ (서명)	위 원 _____ (서명)	
	위원장 _____ (서명)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o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시 '사업명' 및 '발주기관명' 공개(단,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이며,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첨부함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정보마당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본 사업 SW개발 과업42개의 기능점수 기반 위원별 검토의견 종합결과 < 1개월임. - SW개발과업: 155-6FP - 임용 투입기간: 8.2mm - 투입인력: 2인 - 개발기간: 4.174년	< 1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각 위원별 사업기초자료 의견 종합 결과, 본 사업 SW개발 과업 추진 관련 추정 사업기간 4개월로 판단됨.	4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미래석 유사사업 기능점수다 추정기간에 대한 각 위원별 검토의견 종합 결과 SW개발 사업 기간은 4개월로 판단됨.	4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본 사업의 SW개발 과업 이력기 인명확정과 추진 관련 투입인력은 웹사이트 홍보를 위한 통합 마케팅수행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상기 항목에 대한 각 위원별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사업 SW개발의 적정 사업기간을 4개월로 산정함 (사업준비 및 안정화 기간 제외)	적정 사업기간 4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16년 4월 7일		
위 원	()	위 원
위 원	()	위 원
위 원	()	위 원
		위원장

정보원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19) SW사업 영향평가

< 발주기관 준수사항 >

SW사업 추진 시 SW사업 영향평가(민간 소프트웨어와의 유사성,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 및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첨부하여 공개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 정보센터 > SW제도자료실에서 '영향평가'로 검색 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가능

o 개요

-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편성, 발주,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시장 침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 조정하는 제도

o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4조의2 ('18.8.22부터 시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그 밖의 정보화 사업 등을 포함한다.
- ③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민간 소프트웨어와의 유사성,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 및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 경우 영향평가 결과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이 경우 영향평가 결과서(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를 입찰공고 시 공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배포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할 때. 이 경우 영향평가 결과서(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향평가 결과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등 소프트웨어사업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향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발주자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자문단을 통해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 적용 대상

- 공공SW사업(SW 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그 밖의 정보화 사업 등)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제4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 작성 양식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별지 제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8.08.2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영향평가단계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input type="checkbox"/> 사업발주 <input type="checkbox"/>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input type="checkbox"/>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input type="checkbox"/> 단일 기관 <input type="checkbox"/>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input type="checkbox"/> 내부 직원	명
		<input type="checkbox"/> 타 기관 직원	명
<input type="checkbox"/>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	
	○	
	○	
	:	:
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input type="checkbox"/>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input type="checkbox"/>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input type="checkbox"/>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 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input type="checkbox"/>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5. 종합의견	<input type="checkbox"/>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input type="checkbox"/>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20)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발주기관 준수사항 >

소프트웨어 개발·재개발·유지보수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제출에 관련된 사항을 명기

o 개요

- SW사업 실적 데이터 축적 및 SW사업정보 저장소 운영을 통해 예산수립, 대가산정 시 참고정보 제공으로 건전한 SW생태계 조성에 기여



o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수행환경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도구
3. 소프트웨어사업 비용·일정·규모·공수(工數)
4.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특성 정보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o 적용 대상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분리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o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o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참고)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 적용 대상 >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으로 SW기획(IT컨설팅: ISP, ISP/BPR, EA/ITA/ISMP, 정보보안 컨설팅), SW구현(SW개발 등), SW운영(유지관리 및 운영, 보안성 지속 서비스, 보안관제 서비스 등)이 적용대상

o 개요

- SW사업 대가산정은 국가기관 등(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단체 등)에서 소프트웨어의 기획, 구현, 운영 등 수명주기 전체 단계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정보화사업의 합리적·객관적인 대가산정을 유도하여 SW사업의 품질 향상·제값주기 환경 정착 등 SW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o 법적 근거

- 공공SW사업을 대상으로 기존 적용되던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이 사업대가의 민간 자율 결정 유도를 위하여 폐지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6조를 근거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국가기관 등에서 SW사업 대가산정시 준용할 수 있도록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마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① 국가기관등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수행환경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도구
3. 소프트웨어사업 비용·일정·규모·공수(工數)
4.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특성 정보

③, ④ 생략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가기준의 연구

o 대가산정의 일반적 절차

1) 사업유형 식별

→

2) 대가산정 시점 식별

→

3) 대가산정 모형 선정

1) 사업유형 식별

- 소프트웨어사업의 수명주기 및 각 단계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은 아래와 같음

기획 단계

→

구현 단계

→

운영 단계

정보전략계획(ISP)

ISP 및 업무재설계(BPR)

전사적아키텍처(EA/ITA)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정보보안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운영

소프트웨어 재개발

2) 대가산정 시점 식별

- 대가산정 시점에 따라 가용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르므로, 해당 시점에 적합한 대가산정 모형 선택 필요

예산확보 단계	- SW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를 개괄적으로 산정하는 단계
사업발주 단계	- SW사업을 발주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등을 작성하고, 발주금액을 산정하는 단계
사후정산 단계	- SW사업이 종료된 후에 사전 산정된 사업비와 집행된 사업비의 차이를 파악하여 필요시 정산을 위해 대가를 산정하는 단계

3) 대가산정 모형(선정) 및 방법별 주요 내용(요약)

수명 주기	대상 사업유형	대가산정 모형	대가산정 핵심요소	비용 구성	적용가능 시점		
					예산확보 단계	사업발주 단계	사후정산 단계
기획 단계	정보전략계획(ISP)	건설링지수방식 정보전략계획수립비	건설링 지수	① 건설링대가=공수 x (건설링지수) ^{0.95} + 10,000,000 ② 직접경비	○	○	×
		투입공수방식 정보전략계획수립비	투입공수	① 직접인건비 ②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③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④ 직접경비	○	○	○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수립비			○	○	○
	전사적아키텍처(EA/ITA)	전사적아키텍처 수립비			○	○	○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비			○	○	○
	정보보안컨설팅	정보보안컨설팅 수립비			○	○	○
구현 단계	소프트웨어 개발	기능점수방식 소프트웨어개발비(정통법)	기능점수	① 개발원가 ② 이윤=개발원가 x 25% 이내 ③ 직접경비: 시스템사용료, 개발도구 사용료 등	○	○	○
		기능점수방식 소프트웨어개발비(간이법)			○	○	○
		투입공수방식 소프트웨어개발비	투입공수		○	○	○
운영 단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금제 유지관리비	유지관리 총점수	①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가 x 유지관리 난이도(%) ② 직접경비	○	○	×
	소프트웨어 운영	투입공수방식 운영비	투입공수		○	○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	고정비/변동비방식 유지관리 및 운영비	기능점수 투입공수	① 변동비 산정(재개발대가) ② 고정비 산정(투입공수방식 운영비) ③ 직접경비	○	○	○
		SLA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정산법	서비스 항목 보상/재제비율	① 서비스 측정 ② 서비스 평가 ③ 보상/제대 비율에 따른 사후정산	△*	△*	○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등급별 요금	① 최초 Licence 구매 계약 금액 x 등급별 유지관리요금	○	○	×
	보안성 지속 서비스	보안성 지속 서비스 운영비	서비스 항목, 요금	① 최초 제품구매 계약금액 x 서비스 요금(%)	○	○	×
	보안관제 서비스	보안관제 서비스 운영비	투입공수		○	○	○
소프트웨어 재개발	재개발비	재개발 기능점수	① 재개발원가 ② 이윤=재개발원가 x 25% 이내 ③ 직접경비: 시스템사용료, 개발도구 사용료 등	○	○	○	

* SLA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업 정산법은 예산확보 단계 및 사업발주 단계에 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SLA기반의 정산법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사후 정산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 상기 내용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7년 개정판)」(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일부 내용을 요약/계재한 내용으로 세부적인 내용 및 문의는 가이드(원본) 및 관련 부서에 확인 요망

※ 문의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연구팀(02-2188-6936)

4) 대가산정(예제) - 구현단계(SW개발)의 기능점수/투입공수 방식

< 기능점수 방식 >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1. 사전준비	○ 개발대상 업무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개발규모 (기능점수) 산정방법(정통법 또는 간이법)을 결정한다.	개발대상 업무기능 요구사항 규모산정 방법
2. 개발대상 SW 기능 점수 산정	○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개발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식별하고, 복잡도를 고려하여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개발대상 SW 기능점수
3. 보정 전 개발원가 산정	○ 산정된 기능점수에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보정 전 개발원가를 산정한다. - 보정 전 개발원가 = 기능점수 x 기능점수당 단가 * 기능점수(FP) 방식에 의한 SW개발비 산정 시 기능점수 단가에 '제경비' 및 '기술료'에 상응하는 항목이 반영되어 있어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보정 전 개발원가
4. 보정 후 개발원가 산정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보정요소별로 보정계수를 식별한다. - 보정요소 : 규모보정, 언어보정, 애플리케이션유형보정, 품질 및 특성 보정 ○ 식별된 보정계수에 따라 개발원가를 보정한다. - 개발원가 = 보정 전 개발원가 x 보정계수	보정 후 개발원가
5. 직접경비 및 이윤산정	○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직접경비를 산정한다. ○ 이윤은 개발원가의 25% 이내에서 산정한다.	직접경비 이윤
6.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한다. - SW개발비 =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소프트웨어 개발비

< 투입공수 방식 >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1. 사전준비	○ 소프트웨어 개발 정의에 따라 개발대상 업무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한다.	개발대상 업무요구사항
2. 개발 공수 계산	○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입인력의 기술자 등급을 결정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을 결정한다	등급별 투입공수
3. 직접인건비 계산	○ 개발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직접인건비를 계산한다. - 직접인건비 = 투입인력의 기술자등급별 공수 x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	직접인건비
4. 제경비 및 기술료 계산	○ 개발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제경비 및 기술료를 계산한다. - 제경비 계산 = 직접인건비 x 110 ~ 120% - 기술료 계산 =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20 ~ 40%	제경비 기술료
5. 직접경비 계산	○ 소프트웨어 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산정한다.	직접경비
6.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한다. - SW개발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교육 및 정보지원

교육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공부문 수발주자의 SW사업 발주관리 역량 강화와 SW 관련 법제도 현행화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개요

- 교육명 : SW사업 발주관리 역량강화 교육 (무료)
- 교육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교육주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교육대상

- 공공부문 발주/계약담당자 및 재직자
- 민간기업 재직자

• 지원사항

- 교육비용 무료(교재 무료제공)
- 과정별 교육시간의 80% 이상 수료 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단, 교육출장비, 식대, 주차는 제공하지 않음

• 교육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www.swit.or.kr -> 교육정보 -> 교육일정 확인 후 신청가능

상담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공SW사업에서의 법제도 적용관련 고객응대를 위한 SW수발주제도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공 SW사업 상담·민원 상시지원

SW분리발주, 하도급, 대기업 참여하한제, SW기술성 평가기준 등 SW사업 관련 제도의 세부 규정별 적용 방법 등 상담 제공

• 온라인상담

www.swit.or.kr → 온라인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 이메일상담

swhelp@nipa.kr

• 전화상담

043-931-5353

현장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공 SW사업 선진화를 위한 발주전문 업무와 발주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SW발주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공 발주기술 현장지원

요구사항 상세화, 규모 및 비용산정 등 SW사업 발주 쏠단계 기술 지원 및 내부 및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 지원

• 이메일상담

swasc@nipa.kr

• 전화상담

043-931-5499

정보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정보센터"에서 SW산업관련 법령·고시와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WIT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로그인 | 회원가입 | 공지사항 | 사이트맵

SW사업자신고 | SW사업실적신고 | 하도급계약승인 |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 교육정보 | 제품정보 | 정보센터 | 고객센터

SW 사업자신고
SW사업의 영위를 위한 신고·변경 및 사업자신고확인서 발급(공공입찰서류)

SW 사업실적신고
SW사업자실적관리 및 사업수행실적확인서 발급

SW 분리발주계약정보
SW분리발주사업 계약정보의 등록

로그인 : 일반 사업자 발주자 ID PW 비밀번호 찾기 비밀번호 재설정 보안인증서로그인 회원가입

공지사항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휴무
- 9/20 시스템확장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
- 8/4 건물 내진공사로 인한 서비스 일시
- 7/31 시스템확장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
- 아이핀 유료기간제 시달 안내

SW사업자신고현황

[신규신고] (주)사물인터넷	이종진
[신규신고] 하주리 주식회사	김별기
[변경신고] 비에스건설(주)	문일호
[신규신고] 아이엠산업	김희진
[변경신고] (주)시흥	조일호

SW뉴스 **검색뉴스**

- 서러운 불스키업 붐겨 만드는 '스마트팩토리'...
- 이해 조사기관 지휘 '김종필을(AI)' 영...
- 김종필을을 한국어 맞춤형 168억 어질 주...
- 주도 대학발전, AI 개발 계속 확산
- 정확도, 새 단말에 주 투입 드론 실용안지...

법령정보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도 한눈에 보기

SW-ICT강의 수료예보
공공SW-ICT강의 수강수료예보 및 사업수진내역

공정거래 입찰정보
공공기관별 입찰정보 및 입찰결과 발주내역

분리발주대상제품 **GS인증** **신SW상품대상**

문의구분 및 담당자관을 꼭 확인하세요.
문의구분 / SW사업자신고/사업수행실적신고 담당자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화 / 02-2188-6967 (FAX:0502-777-6967)
문의구분 / 공공SW사업제도 (SW수발주제도 상담) 담당자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화 / 043-931-53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pa SW중심사업체 소프트웨어진흥원 서울보증보험 나라장터 KOSA

FAMILY SITE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1218721 운영책임: 김현진 | 책임자: 정봉호 | 담당: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자신고/실적신고 증명서발급: 02-2188-6967 | 서울시 송파구 송파로 136, IT관제지원 센터 42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Copyright © 201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All Rights Reserved

- 문의처 -

- SW법제도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적용팀 (043-931-5353)
- SW사업 영향평가 문의 : Help-desk(02-2188-241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적용팀(043-931-5362)
- SW발주기술지원 컨설팅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적용팀(043-931-5499)
- SW사업정보 저장소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적용팀(043-931-5498)
- 사전규격 법제도 준수 의견서 등록 문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생태계개선팀(02-2188-6927~8)
- 소프트웨어 사업 적정대가 산정 문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연구팀(02-2188-6936)